

[주주제안권 행사 안내]

1.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

주주제안은 상법 제 363조의 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그해의 해당일)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합니다.

주주 제안을 하는 자는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소유자 명세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.

2. 주주제안 처리 절차

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, 주주제안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적법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,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

3. 주주제안 거부 사유

- 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
-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%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
-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⑤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

4. 주주제안 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커뮤니케이션팀 :

이우현 과장 (woohyun_lee1@kolon.com)

권태은 대리 (tayeun_kwon@kolon.com)